



서비스 무역 관련 양자/다자협정  
정부조달 관련 조항 비교 및 분석

Sungjin Kang

대외경제정책연구원

September 30, 2014

2014-10-02

# About the Speaker

2

## □ 강성진

- Consultant, World Trade Advisors
- PhD Candidate, Korea University
- LLB, Korea University / LLM, University of Michigan Law School
- Member of New York Bar

# Disclaimer

3

- The views expressed in this presentation is strictly personal, and does not reflect any official view of the World Trade Advisors

# Outline of the discussion

4

- 서비스 무역에서의 정부 조달
- WTO 협정상 서비스무역과 정부 조달 관련 규범
  - ▣ GATS / TiSA
  - ▣ 개정 GPA
- 기타 양자 협정상 정부 조달 관련 규정
  - ▣ 한-EU FTA
  - ▣ 한-미 FTA
- Implication for the Future

# 서비스 무역에서의 정부 조달

5

- 정부조달이 전체 GDP에서 차지하는 규모: 2011년 현재 13% (2013 OECD 회원국 평균)
  - ▣ OECD 국가 전체 정부 소비 규모의 30%
  - ▣ 한국: 2010년 기준 \$3.4B
- 정부조달에서 서비스 조달이 차지하는 비중
  - ▣ Data는 많지 않으나, 건설 서비스를 위시해서 그 비중이 상당한 것으로 추정

# GATS / TiSA와 정부 조달

6

## □ GATS

- 서비스 무역에 관해 현재 유일한(?) 다자 협정

- GATS Art. XIII:

- 상업적 재판매 또는 상업적 판매를 위한 용역 공급 목적이 아닌 정부 사용 목적으로 정부 기관이 구매하는 서비스의 경우 GATT II조 (MFN), XVI조 (Market access), XVIII조 (내국민대우) 적용 배제
- WTO협정 발효 후 2년부터 서비스무역에 관한 다자협상 시작

- 동일 취지의 조항이 TiSA Core Text에 반영

# WTO 정부조달 협정 (GPA) (1/2)

7

- 1994년 타결, 1996. 1. 1. 발효
  - 총 42개국 (EU 28포함) 가입: 가입국간에만 유효
- 회원국이 양허한 정부 조달에 관련된 모든 법, 규정, 입찰 절차 및 관행
- 협정상 일반 원칙
  - 내국민대우 및 비차별원칙 (제3조)
  - 원산지규정(제4조)
  - 대응구매(제16조)
- 입찰 방식: 일반공개입찰, 지명경쟁입찰, 수의계약
  - 입찰 참가시 공급자의 재정적, 기술적, 상업적 능력 고려
  - 입찰 관련 서류는 WTO 공식 언어 중 1개로 작성할 것
- 조달 절차 관련 분쟁에 대한 사법/행정적 심사 절차 및 WTO 분쟁해결절차 원용

# WTO 정부조달 협정 (GPA) (2/2)

8

- WTO GPA상 한국의 양허:
  - 중앙정부
    - 130,000 SDR 이상의 상품/서비스 공급 계약 / 5,000,000 SDR 이상의 건설 서비스 공급 계약
  - 지자체
    - 200,000 SDR 이상의 상품/서비스 공급 계약 / 15,000,000 SDR 이상의 건설 서비스 공급 계약
  - 주요 공기업
    - 450,000 SDR 이상의 상품/서비스 공급 계약 / 15,000,000 SDR 이상의 건설 서비스 공급 계약
- Korea – Procurement 사건 (WT/DS163/R)
  - 인천공항 건설 당시 승강기 (엘리베이터/에스컬레이터) 입찰 절차에 대한 미국측 문제제기
  - 패널 판정: 1999년 당시 인천 공항공사는 GPA Annex 1의 양허 대상 기관이 아니었고, 미국의 GPA 협정상 기대이익 침해 없었음 → 한국 승소

# 2014 개정 GPA (1/3)

9

- 2014. 4. 7. 발효
- 총 10개국 가입 (EU 28을 개별 국가로 환산시 37개국, 한국 현재 미가입)
- 적용 범위: 회원국이 양허한 기관들이 수행하는 상업적 판매나 상업적 재판매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각종 계약 수단을 통한 조달 (상품 /서비스 불문)
- 주요 용어 정의: 1994 GPA에는 없었으나 개정 GPA에 추가
- 일반 원칙
  - 비차별 원칙
  - 전자입찰 관련 기술 및 SW의 호환성 및 범용성 보장
  - 입찰 절차의 투명성 및 이해 충돌 방지
  - 정부 조달에 관해서서 일반 수입 거래과 상이한 원산지 규정 적용 금지
  - 대응구매 (Offset) 금지

# 2014 개정 GPA (2/3)

10

- 개정 GPA 적용 예외
  - 부동산 매매 / 임차
  - 보조금 등 정부 지원 및 비계약적 동의 (non-contractual agreement)
  - 재정 및 금융, 신탁 기관 등이 정부 부채 판매, 변제, 유통 등을 위해서 행하는 각종 거래
  - 공무원 고용계약
  - 개발원조 및 국방 목적을 위한 조달 계약
- 개도국에 대한 S&D treatment
  - 개도국 참여시 즉각 회원국이 양허한 범위에서 최대한 우호적인 (most favorable) coverage 제공
  - 잠정 조치 (가격특혜, 대응구매 허용, 특정기관이나 분야의 단계적 추가, 타 회원국보다 높은 threshold)
  - GPA 이행 기간: 최대 5년 (LDC), 최대 3년 (기타 개도국)

## 2014 개정 GPA (3/3)

11

- 조달 관련 법령 및 절차 정보, 조달 공지 등의 전자 매체 공개
- 조달 수단: 기존 GPA의 3개 조달 수단 + 전자적 조달 (전자 경매 등)
  - ▣ 전자경매시 경매 진행과 관련된 정보 사전 공개
- 분쟁해결: WTO DSU 절차 활용
  - ▣ 기존 GPA: 분쟁해결 패널에 정부조달 전문가 1인 지명

# 한-EU FTA상 정부조달 관련 규정

12

- 일반 정부조달 시장: 현행 GPA 수준 유지
  - ▣ 민자사업: 1,500만 SDR 규모 이상의 사업에 개방
    - 한국: BOT (Build – Operate – Transfer) 계약
    - EU: Public Works Contract (민자 참여 공공 건설 계약)
  - ▣ 일부 예외 제외하고 정부조달 절차에 개정 GPA 전면 적용.
    - 기존 GPA 적용 영역
      - MFN
      - 개도국 특별 대우
      - 입찰 참여 조건
      - 기존 GPA XXI조 (Institutions) 및 XXII조 (Final Provisions)

# 한미 FTA상 정부조달 관련 규정

13

- 양허 대상 상품·서비스 양허(Concession) 하한선 인하
  - 미: 20만 달러 → 10만 달러 / 한국: 약 2억원 → 1억원
- 주요 내용
  - 입찰 참여 및 낙찰시 과거 조달 실적 조건 철폐
  - 전자적 수단에 의한 조달 수행시 관련 기술 및 SW의 호환성 및 범용성 보장
  - 기술 규격 (Technical specification) 설정 허용
    - 천연자원 보전과 환경보호
    - 작업장에서의 기본원칙과 근로조건 관련 법령의 준수
  - 원칙적으로 GPA 주요 규정 준용
    - GPA가 개정되거나 다른 협정으로 대체되는 경우, 양 당사국은 협의 후에 본 장 개정 가능
    - 한국: 중소기업 참여 보장 규정의 본 장 적용 예외
      -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
      - 사회간접자본시설에 관한 민간투자법

# Implications for the Future

14

- 정부 구매목적이 아닌 상업적 판매/재판매를 위한 재화/용역 구매는 GPA 적용 대상 제외 (GATS XIII, TiSA)
- TiSA에서도 정부조달 관련 규정은 협상 대상에서 제외
- 한국은 아직 개정 GPA에 가입하지 않았으나 한-미, 한-EU FTA를 통해 사실상 개정 GPA 체제에 편입
  - 개정 GPA 정식 가입시 한-미 FTA 수준의 양허 대상 계약 금액 인하 가능성 큼
  - GPA에서 이미 일정 금액 이상의 서비스 계약을 cover: 서비스 무역에 특별히 추가적 영향을 미치는 내용은 많지 않음
  - TPP 정부조달 협상도 개정 GPA 내용을 바탕으로 추진 가능성 높음
  - 협정문상 원칙은 기존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아도 협상 상대국의 정부조달 시장 개방을 이끌기 위한 협상이 주요 challenge

15

## Question & Answer

